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 9. 7 선고 2022가단5487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B

소송대리인 C

변 론 종 결 2022. 8. 17.

판 결 선 고 2022. 9. 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2020. 12. 2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은 7,141,428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141,42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347조 제1항, 제406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하고,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 이러한 규정 취지와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인 개인회생절차의 성격, 부인권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총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개인회생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여 개개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 판결 등 참조).

청구취지 기재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의 주체인 채무자 C에 대하여 2022. 4. 4.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광주지방법원 2021개회527022)이 내려진 사실 및 원고가 위 개인회생 사건의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가 위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인 2022. 4. 25.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개인회생채권자인 원고가 청구취지 기재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며 그 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희두

별지